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98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소병훈 · 박희승 · 박상혁
이개호 · 강준현 · 권칠승
박 정 · 김 윤 · 김원이
이성윤 · 조계원 · 허 영
용혜인 · 강득구 · 어기구
이수진 · 김주영 · 부승찬
이주희 · 강경숙 · 안태준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제4항 등).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방법 및 절차”를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방법·절차”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제5항 중 “제8조제3항·제4항”을 “제8조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내”를 “신청 간주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③ (생 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p>	<p>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u></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 ----- -----</p>

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생략)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신청
----- (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제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2. (생략)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①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

제1항 및 제2항-----

-----.

④ -----
--- 제3항-----

-----.

⑤ -----
----- 제4항-----

-----.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합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

----- 제8조제4항·제5항 -----
-----.

⑥ -----

----- 신청 간주의 -----
-----.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제8조제4항 -----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